

2021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0년 4월 23일(금요일) 10:10 ~ 12:0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임시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정용채, 주상현, 안문석, 박성수, 양벼우, 김용우, 정재안, 김지광, 김민성
위원

○ 불참자 : 김남수, 조재영, 황인호, 최옥채, 이민규 위원

○ 상정안건

- 2021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간 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이경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1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
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 위원장을 정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양규혁 교무처장님을 임시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주상현)

간 사 : 참고로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정해지기 전까지만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이경환)

위원들 : (전원) 동의합니다.

간 사 :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양규혁위원님들 임시위
(이경환) 원장으로 오늘 재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
까?

간 사 :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양규혁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
(이경환) 하고 임시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0회계연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2021회계연도 재정
(양규혁) 위원회 위원장 선출 때까지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
말씀 생략하겠고요. 다만 신규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규위원에 대한 간
략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

임시위원장 :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에 10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중 「2021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에 일반직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안녕하세요. 입학처장 주상현입니다. 위원장으로 인품이 훌륭하신 우리 양병우 교수님 추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병우 위원님 추천에 따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추천과 재청으로 양병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의 수락인사를 들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병우)



위원장 : 오늘 저희에게 부여된 심의의결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위원회 식순을 보시면 네 번째 항에 심의의결사항에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세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네 번째 안건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이 3개 안건을 상정을 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책상위에 보시면 안건에 대한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주시고요. 두 번째 안건을 상정합니다. 물론 일부자료를 배포해드렸습시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내용을 보시면 개정방향이 무엇인가를 본 안건에 대해서 학교 측 제안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네 재무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에 학교에서 그동안 본 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계승과 역할을 강조하고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산학연구본부장을 처장으로 입학본부장을 처장으로 국제협력본부장을 국제협력처장으로 이미 다 발령을 다 받으셨죠?

위원장 :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이 재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그래도 정재
(양병우) 안 수석부지부장님?

위 원 : 이것은 학교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정재안)

위원장 : 공무원노조지부장님?
(양병우)

위 원 : 말씀하신대로 3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다 임명이 되어서 이걸에
(김용우)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김지광 총학생회장님?
(양병우)

위 원 :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광)

위 원 : 동의합니다.
(김민성)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이라서 발언기회를 당연히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서 두
(양병우) 번째 안건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 3안이 되겠습니다. 제 3안은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2안
건은 표결 없이 사실은 결정된 거고요. 다음으로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
안」 건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3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준비해주신 총
무과 이인혜 인사팀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겠습니다.

인사팀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이인혜)

위원장 : 사항이 많기는 합니다만 페이지가 많기는 합니다만 안건 번호 3번에 2페이지
(양병우) 입니다. 2페이지 7쪽 급여부분, 직급부여 부분 그 다음에 33조 연가부분 그
다음 공가부분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내용 자체는 우리
대학회계직 직원 선생님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것들 좀 개선해서 복지가 개선
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하고자 있는 함에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
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고
제안사항까지 포함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안문석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7조에 보면 대학회계직 9급에서 6급
(안문석) 사이를 주게 되있네요? 이게 6급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규
정에 있는 건가요? 우리 학교가 마음대로 정한건가요?

위 원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회계직은 순수하게 대학자체적으로 다 민간회
(박성수) 사원 자체규정을 두듯이 재정회계법에서 자체규정으로 두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 네 아마 법에 의해서 우리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도 교육공무원 직급이 있듯
(양병우) 이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법에 의
해서 직급이 또 나뉘지고…….

위 원 : 직급은 저희 자체규정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대학마다 이런 직급을 쓰는
(박성수) 경우도 있고, 다른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대학의 완전한 자율입
니다.

위 원 : 지금 이번 안에 대해서 대학노조와 협상이 이루어진 상황인 겁니까?
(김용우)

위 원 : 예,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박성수)

위 원 : 네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 사항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용우) 무기 계약직하고 연봉제하고 지금 현행하고 지금 학교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
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보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중이신가요? 아니면 별다른 사항이 있는지?

위 원 : 보충은 무기 계약직 연봉제로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호봉제 정
(박성수) 규직 직원 숫자가 전국 국립대학교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보통 머 35명~50명
이런 수준인데 저희는 지금 186명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저희 공시자료 들어
가 보시면 아실꺼고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김용우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거나 정예화 문제, 양적 확대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
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약직 임용으로 능동성을 가지고 가자 지금 그렇
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소화 인원을 그러니까 전에는 조
금 업무가 생기면은 한명 뽑아다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억제하고 1년 재배치, 정예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 입학사정관 4명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전문적으로 ~~피하면~~ ~~숨통에~~ ~~스트레스~~ ~~받지~~ ~~않~~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 원 :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재안) 장님

위원장 : 예,
(양병우)

위 원 : 대학노조 수석부지부장 정재안입니다. 우선 우리 대학노조는 대학가 노조라는 이
(정재안) 름을 걸고 싸우다가 다투거나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갈등을 아주 폭넓게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유발하고자 하는 노조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학 재정 코
로나19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했지만 2년 동안의 회의록을 쭉 살펴봤을 때도 우리 대학노조
에서는 계속 뽑지 말라 현재 인원으로써 최대한 운영을 해서 대학 재정의 안정
화를 꾀하고자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회계직
무기 계약직 직종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상당히 참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달면 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학노조에서도 노조
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머냐면 돌출행동을 하지 말아라 왜냐면 너 하나로
인하여 대학이 혼란스러워 진다. 실제 그런 일이 얼마 전에도 있어서 대학 노조
내에서도 그 노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제
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행이

위 원 : 여기 지금 규정 모음집이 있어서 보시면은 사무원이라든지 관리원이라든지 현행 (정재안)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저희는 그 직종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또 이런 직종을 신설을 해서 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받으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연봉이 감소되거나 또 줄어들면 이들이 어디를 찾냐면 저희 대학노조 문을 두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에 의해서 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학본부 문을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설을 자꾸 하지 말고 현행 법 규정 내에서 사무원이라든지 해당 직종이 있겠죠? 그 부분을 충분히 명시해서 지금 있는 대로 해서 호봉제로 가서 차후에 예상되는 불만을 저희는 막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왕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 (박성수) 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일을 제외하고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고요. 이미 호봉제, 연봉제 투 트랙은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많은 국립대학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무기 계약직은 종신고용이 되기 때문에 준 정규직입니다. 아마 이제 호봉 지금 정부가 직무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에 유사한 연봉제 트랙으로 저희는 반 이상의 직원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많은 국립대학들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 예, 우리 정재안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왕에 (양병우)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고려가 돼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회의록에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조금은 좀 호봉제와 연봉제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직책인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떤 직책인 경우에는 좀 느슨하고 그래서 사실 일의 형평성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교직원 간에 갈등의 문제고 그래서 좋은 직책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직장 생활이 되다 보면 보람 있는 직장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직책별로 어느 직책이 과중하게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호봉제와 연봉제의 근간을 혼드는 쪽 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면서 소위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직책이 굉장히 힘든 분들 무리한 야근을 하시고 어떤 부서라고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그러한 부분들이 보상이 되지 않을까 많지는 않더라도 단계별로 조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우리가 직원선생님들의 대학발전 노고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위 원 : 원래 처음에는 더 이야기를 하려고는 안했는데 저도 준비는 돼 있었지만 대학회
(정재안) 계직, 무기 계약직 직종 신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 전체
적인 내용에 대해서 3안에 대해서 또 대학노조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 대학노조 현재 조합원 287명이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안에 보시면은 제4조 별표3 정원에 관
한 사항은 대학노조 조합원 287명이 전체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법률과 규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요. 여기
에 심의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정모음집 28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위
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7조 7항에 보시면 대학회계직원 총 정원에 관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4조 별표3은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테 그 외에
사안들 지금 아까 말했던 직종 신설이라든지 재직기준 그 다음에 물론 단체협약
에 의해서 이 내용이 재정위원회에 심의·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
고자 하던 내용도 이미 작년에 7월에 이 규정이 신설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대학노조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원은 심의·의
결한다고 되어있지만 그 외에 사항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 규정개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면 될 내용이
고 작년 7월 이전에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8쪽 8항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으로서 국립
대학의 장, 우리대학 총장님께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가라고
도 생각을 저희 조합원들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학의 모든 개정들
이 규정에 대한 개정들이 대학 부설 연구소까지도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우리 대학의 규정 개정사안들처럼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도 될 것 같습
니다. 물론 현재 규정은 심의·의결하게끔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우리 이 규정이
조금 잘못되어있다고 우리 대학 노조원 즉 대학회계직 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
니다. 그래서 또한 이 규정 때문에 우리 대학노조 287명의 조합원들이 사실은 신
분과 같이 있어서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
늘 처음 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공직협 회장님께서
이 내용들이 물론 대학의 장이 위임한 대표분들 8분들과 우리 대학노조에서 위
원장님이 위임한 8분이 이미 단체협약에 의해서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규정에 의해서 다시 여기서 심의·의결을 두 번째로
거치는 겁니다. 지난 회의록에 보시면 여기 사무국장님께서 하나의 대학 내부에
대학 본부 측에 프로세스를 즉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만 그 이전에는 이 의사결정과정이 없었어도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진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 조항이 있어서 누
군가가 벌금이라든지 그러한 패널티를 받을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위 원 : 아니라면 대학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또 대학의 발전 (정재안) 을 위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이고 규정개정의 주최자가 누가 되어야 하고 이것 (양병우)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큰 것은 그것이고 노조 측 입장에서는 본 부 전체의 규정 개정하는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의견에서는 규정을 바꾼 거보다는 그런 제안사항이시죠?

위 원 : 네 그 제안이고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현재 여기서 심의·의결 하게끔 되 (정재안) 어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여기서 심의·의결해서 통과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그니까 그것을 재정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는 (양병우) 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규정개정위원회 쪽에서 그런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즉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위 원 : 네 그렇습니다.

(정재안)

위원장 : 네 사무국장님

(양병우)

위 원 : 네 일단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느데서 의결을 하고 논의를 하는 (박성수) 것은 철저히 법령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해야 되고 실제 규정도 되있는대요. 일단 대학회계직이라는 법적근거 자체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학회계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규칙과 저희 학교 자체에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상위법에 근거를 둔 하위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적어도 재정위원회에 소관사항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위원회에 소관 사항인데 법에 보면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무회의는 심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어떤 법에도 학무회의가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에도 그리고 이 재정회계법은 특별법입니다.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보다도 우선하는 재정회계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회계직에 관한 사항이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이냐가 쟁점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급여수준이나 기타 모든 것 자체에 모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규정개정 대학회계직 관련 규정 뿐만 아니라 기타규정 개정할 때도 재정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닌가 왜 학무회의를 가느냐 라는 것을 지금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은 학무회의

위 원 : 안가거든요? 근데 규정만 기존에 일반원칙에 따라서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무
(박성수) 회의를 가는 절차가 지금 같 수는 있지만 그게 가능 규정이고 필수 규정인지는 지금
법률검토를 착수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결론을 내리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자
체가 대학회계직 관련이 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 심의·의결하는게 법에 취
지에 어긋나느냐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당연한 재정위
원회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논의에 따라서 정원조정은 특별
히 강조해서 항을 뺀 거고 일반적인 재정회계규정 재개정에 관한 사항, 재정회계
규정의 재개정에 당연히 대학회계직 관련 규정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상급 법에 따라
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 체계상 재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의 의결하는 것
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최종결정 기관인지 아닌
지 학무회의와의 충돌문제 그것은 다시 우리가 만들어 논 법률 체계를 말씀드렸습니
다. 그 다음에 단체협상하고 우리 학내절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협은
저희가 단체협상을 하는 거고 그 규정은 학내절차 우리 재정법이든지 학무회의라든
지 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우려하는 대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협상을
미비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노무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교가 곤란해집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를 거치는 게 왜 구성원들이 불안한지
그것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학교 내 의사 프로세스가 하나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재정위원회를
거치면 불안하고 학무회의를 거치면 불안하지 않는 점사그장은 좀 이해하기 어
려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학무회의야 말로 지금 위원을 하나도 참석 못하고 학장님들
하고 학내 보직교수님들하고 구성이 되어있는게 학무위원인데 왜 학무위원을 지지하
는지는 약간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재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인건
비로 소요되는 재원이 1년에 2,5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관련된 것들이 결
국은 재정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위원회를 거쳐서 예
산편성권한을 가진 재정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제대로 된 학내 의사결정구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사실은 규정개정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규정 전체에 대한 개정권한이 넘
(양병우) 어와서 사실은 본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큰 의미에서는 관계가 있는 사
항이어서 모처럼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노조
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대화로써 상호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위 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너무 딱딱한 회의로 귀중한 시간을 지체
(정재안) 되고, 지연되고 하는 것도 상당히 난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측에서 말씀드
리는 내용은 지금 국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극단적인 방법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
만 그래도 항상 대학 측을 존중하고 저희는 항상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학의
입장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불안하나
면 그전까지는 단체협상 임금협상을 저희 대표들이 직접 가서 대학 측의 대표들과

위 원 :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재안) 번에도 회의록을 봤고 전임 위원이었던 대학노조 사무국장 이문선선생님께 서도 들은 내용이고 이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재정 위원님들과 단체협상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사용자가하고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법률적 충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가 사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얼굴 맞대고 근무해야 됩니다. 사무국장님 다른데 발령 나시면 저희는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부드럽고 원활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 원 : 네 사무국장 개인을 지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그 우리 7월 달에 이 규 (박성수) 정 통과시킬 때 참 논란이 많았고요. 기초적인 발입 자체는 여러 직종위원님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지금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노조 측에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위 원 :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머냐면 제가 또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정재안) 하면 노조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다.

위 원 : 우리 재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의 발의가 있었고 논의를 거쳐서 또 학내에 (박성수) 우리 처·국장회의라든가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거쳤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조 (양병우) 측 입장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다만 항상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노조 측 대표하고 노조원들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공감대를 이루긴 이루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재안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설명을 했다가 만날 기회를 자주 가져서 그 자리에서 많은 위원들이 다수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불합리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면 국장님이나 대학 측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주 초청을 해서 우리 노조회의있을때도 그렇고 설명회를 위원들하고 같이 갖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도 쉽게 풀릴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밀월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도 먼저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총장님이 됐든 의장이 됐든 그렇게 해서 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규정개정안에 관련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정재안위원님께서 해주셨고요. 그 외에 혹시 또 의견이나 제안 있으십니까?

위 원 : 주상현입니다. 저는 사실 이 규정개정이 논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다 (주상현) 이해당사자인 대학노조와 상당 부분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었기 4조, 7조, 33조, 37조, 46조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논의가 성립된거죠?

위 원 : 내용은 이미 다 논의가 됐습니다. 현 규정상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다 (정재안)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 원 :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박성수)

위 원 :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큰 (주상현)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실제적으로는 이제 의결과 상관없이 저희가 제안을 논의를 한 것은 (양병우)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해주신거요. 왜냐면 규정개정에 관

한 의결권이 누구한테 있어야라는 원천적인 이야기도 돌아갔죠? 그래서 그것이 원천적으로 보자면 규정개정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로 할까요? 반대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 위원이 한분,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4가 되겠네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학교 재정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특히 우리 기숙사에 학생들이 입실하지 못해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쉽지 않은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상노 기획예산부처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대하여 (이상노) 설명함.

위원장 : 네 네 번째 안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병우) 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위 원 : 대학노조 측 정재안입니다. 또 본의 아니게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마이 (정재안) 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대학 노조 측에서 지급대상을 전 대학직원으로 대학회계직원으로 변경요청을 보냈습니다. 근데 심의의견은 예산문제로 인한 수용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대학노조원들이 생각하기는 분명히 퇴직한 직원들이 있는데 전년도 결산액 범위 내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자료 안건 첫 페이지 표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당구장 표시로 교육부 교연비 지급기준 승인 요청 예정이며, 교육부 승인여부에 따라 지급기준 변경 가능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 교육부에 교육연구비 가이드라인 예산편성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변경되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옆자리에 앉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무능력이

위 원 : 떨어지고 있습니다.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재안) 부분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고 고려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못 받고 있는 분들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4월 신규채용으로 대학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236명이 못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이면서 본인이 학생지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기획처장님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양병우)

위 원 : 제가 금년 2월부터 파악을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 (정용채) 가 교연비 지급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부에 올리지만 그리고 각 거점 국립대학에 신청현황을 받지만 현 증가이외에는 전혀 교육부에서 반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리고싶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쉽게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뿐만아니라 거점국립대에 최근3년간에 자료 조사를 해봤을 때 모든 대학에 동일한 잣대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인원이 증가가 있을 때 증원을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만큼 해주지 추가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 확보문제라는 의미는 교육부의 하가에 의해서 ~~합~~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어진 ~~파~~ 나뉘먹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위 원 :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대학노조 측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정재안) 이해하고 또 저희도 집행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을 절대 유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밑에서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려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시도를 안한 것 (정용채) 이 아니라 거기 교육부에 제가 기획처장으로 임용되고 난 뒤에도 교육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봤는데 현원 증가이외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일괄적인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교육부에서 해온 방침이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교육·연구 학생지도비를 대학노조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전략 (양병우) 적으로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전국 대학노조 협회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우선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연구 학생지도비라는 항목을 대학노조도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위원장 : 조금 전국 대학노조에서 연구를 수행을 해서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것이 난 맞
(양병우) 다. 왜냐면 혹시 아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연구 학생지도비라는게 사실
은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반값 등록금되면서 과거를 설명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봉급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봉급을 깎아서 그것을 대안해 줄 수 없어서 기성회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성회
계가 헌법상 불법이라고 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등록금이 줄어들면
서 우리 교수들의 봉급이 깎여가지고 며 대처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2
~3년 연구해서 만들어 낸 것이 이거 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는 교육·연구 학
생지도비를 우리를 대상으로 통합시켜 포함시켜 달라고 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일하게 대학 구성원이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노조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머냐면 좀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경을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 노조에는 계속 넣어달라고 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안위원님은 상당히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노조의 김용우 지부장님은 역할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
데...

위 원 : 사실 이 안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
(김용우) 번 이야기 한단 것 자체가 왜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안을 모든 구성원들
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나아가야지 계속 교내에서 사실 저
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직원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도 대학노조 사람들이 다 안
받는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기 때문에 한 번 기획조정위
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그 때 인원을 한정으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이 아
픍니다. 그래서 먼가 큰틀에서 바라보아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 그래서 기획처에서는 교육·연구 학생지도비의 탄생 배경이라든지 이런
(양병우) 것들을 좀 쪽 정리를 해서 왜 안되는 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문서화시켜
서 공유를 하면 다른 전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
습니다.

위 원 : 예 말씀해주시는것에 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정용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내역에 사
용에 관한 것도 그래서 직원분들의 학생상담 같은 것이 근무시간에 하면
안되고 점심시간에 근무 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저기 또한
증빙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왔지만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도 11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 나름대로 충분히 소명할 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적게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 원 : 사실은 권익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학노조 쪽에서의 요구사항을 (정용채)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더 증액을 해줘야 한다고 해주는 것이 권익적인 측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대학노조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더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원 :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대학노조 측에서는 가능한 학내에서 (정재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전북대라는 이름이 밖으로 나갔을때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간다면 저희도 대외적으로 아주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분쟁이 있고 뭔가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들은 대학내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고려해서 저희가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한 것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구성원의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 (양병우) 습니다. 저는 예전에 위원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또 정재안 부지부장님도 그렇고 김용우 지부장님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재정위원회가 되겠구나해서 오늘 상당히 기쁜 마음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안전이 통과를 해야 되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위원들 : (거수 없음)

위원장 : 그러면 안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병우) 이상으로 3개 안전됐고요. 단순히 재정위원회가 안전을 상정하고 가결하는 것보다는 재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게 실제적으로 대학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재정관련 채널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 기타없이 관련 안전을 제시를 해주시면 대학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전달을 받아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개선사안을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3개 안전 가결을 마치고요.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 사항 협의 사항으로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 자료가 없어서 제안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간 사 : 이 내용은 오늘 저희가 한 회의록을 위원들 서명을 다 받아야 되는데요. (이경환) 대표3인을 추천을 해서 대표자만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 원래는 전원 서명을 해서 확인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회계법에 되
(양병우)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효율성 문제도 떨어지니까 대표 3인이 위임을 해줘
서 오늘 회의된 내용들이 의결사항들을 의결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면 재정위원회 운용 효율화에 관한 간서명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주상현, 정재안, 김지광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주상현 위원님, 정재안 위원님, 김지광
(양병우)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자리가 되어서 함구하
고 있었겠지만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총학생회장하고 대학원생은 의견을
못내셨고 그래서 기타 안건으로 이 두분 말씀을 듣고 또 사무국장님 기타
안건이 있으셔서 먼저 김민성위원님

위 원 : 저는 오늘 이 회의 주제에 있어서 많은 토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회계적
(김민성) 원님들의 상황을 알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대학 연구원이나
이런 조금있는 일도 복지나 휴가 관련등 해서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혹시 국비조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조교는 저희가 교육공무원법에 따
(김명숙) 라서 규정이 돼있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보수도 규정에 따
라서 지급하고 연가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것이 공무원하고 동일합니다.

위 원 : 조교도 마찬가지로 받고있는건가요?
(김민성)  12시 18

재무과장 : 예 그럼요.

(김명숙)

위 원 : 네 감사합니다.

(김민성)

위원장 : 우리 총학생회장님 말씀 듣기전에 한번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말해보면 재
(양병우) 정위원회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위
원회는 우리 대학예산편성과 사업개발에 관한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그리고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국회로 이야기하면 예산결산위원회죠. 어떤 의미
로 보면 예산 편성이나 사업개발에 관한 것이 일반 학부 학생들에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근데 등록금은 똑같이 냈는데 대학원 부
분에 대한 예산은 자세히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
라고 생각이 되요. 근데 사실은 많거든요. 대학원생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기능이라는게 대학전체를 자우할 수 있는 정도로 왜냐면 교수님들의 연구력
이 결국에는 대학원생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대학원생들의 후생복지와 대학
원의 연구기반을 위한 서포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대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개발을 하
는 예를 든다면 과거 제가 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대
학원생들에게 최소한 10만원씩만 전체 대학원생에게 지불좀 해주자

위원장 : 그래서 대학원 인턴쉽이라는 제도를 그때 어렵게 마지막 3년연구해가지 (양병우) 고 했어요. 근데 재정이 항상 좋아지면 모를까 나빠지죠 항상 그러니까 그것부터 없애더라고요. 한 3년 시행했나요? 그래서 그런것이라든지 우리 대학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거든요. 그게 기반이 되 가지고 지금 대학원 장학금 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플타임 그게 이름 이 먼가요?

위 원 : 현재 교수님이랑 반값등록금 지급을 두명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정용채) 올해부터는 입학 첫 학기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이게 대학원생 과목 구성 재정위원회 위원에 없었거든요. (양병우) 그래서 그런 역할을 조금 담당을 해주시면 사업개발을 해주시고 말하자면 우리 대학 발전에 있어서 대학원생이 갖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면 그게 곧 대학원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학의 발전에 초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총학생회장님

위 원 : 네 저는 한가지 여쭙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금일 안건으로 나왔던 부분 (김지광) 중에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해서 평가지표 내용을 확인해봤을때요. 학생의 수강편람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평생지도교수제도가 전공진로설계과목으로 조금 바뀌게 되면서 그 부분이 총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평생지도상담이랑 전공진로상담이 동시에 지급이 되는것인지 새로운제도가 마련이 되는것인지 한 번 여쭙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 원 : 예 지금 이번 학기에 전공진로설계가 개설이 돼서 교연비 중에 학생지도 (정용채) 관련된 것이 좀 중첩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학교 전체교수님들의 교연비가 종전까지는 일반트랙과 학술트랙으로 나뉘어져 있고 일반트랙에서는 교육,연구,학생지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각 항목별로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모두 학술트랙으로 교수님들 전환하는 형태로 그니까 교수님들이 학생상담과 관계없이 연구만 하시면 이 교연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가고 전공진로설계 관련되서는 학생이 교과목을 신청을 해서 학점을 받고 교수님들은 그것을 지도함으로써 책임시수를 인정받는 이런 형태로 내년부터는 정리되려고 합니다.

위 원 : 그러면 추가로 여쭙보고 싶은게 만약에 학술트랙으로 변경이 됐을 때 현 (김지광) 재 일반트랙에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스터디 지도등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원 : 그것은 교수님 개인별로의 업적평가를 저희가 또 하는대요. 교수님이 학 (정용채) 생의 동아리지도라던가 이러한 것을 할때면 그것이 다 교수님들의 개인 의 봉사항목으로 다 들어가서 교수님들의 성과연봉으로 연간 누계 점수에 의해서 S,A,B,C로 차등지급하는 형태로 교수님들이 추가적으로 수고하시는

위 원 : 반영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용채)

위원장 : 우리 총학생회장님이 사실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
(양병우) 네요. 전공진로설계라는 새로운 과목이 나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새롭게 시도하는것이기 때문에 전공진로설계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해져야 학생들이 명쾌하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왜 새로운 학점을 이수해야되나 졸업학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졸업학점에 넣어준다면 괜찮지만 부가적으로 들어가 지 않느냐 그니까 의무하고 책임만 늘어났다. 지금 학생들의 불만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교무처장님이 조금 부탁드립니다.

위 원 : 졸업학점에는 들어갑니다.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이것은 사실 학생들이 취업활동이나 전공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는 어떤 수업외에 비교과 활동들을 자기포토폴리오로 학교에서 공인받는 포토폴리오로 졸업을 하면 아무래도 성적표만 가지고 졸업을 하는것보다는 취업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논리적으로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현재 말하면 상담내용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 네 설명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안전 말씀해주셔서요.  양

(양병우)

위 원 : 네 안전은 없고요. 몇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사실 우리 학교에 있어서는 재정에 관련되서는 국회와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운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개정안에서도 보면 자료 요구권도 있었고 회기도 예산, 본예산 심사는 한번에 만나서 끝내는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회기도 늘려서 충분히 의견도 듣고 논의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위원회 중요성에 대해서 법적 지위나 위치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주에 2021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겁니다. 이미 자료는 갔으리라고 생각되고 만약 안갔으면 오늘 내로 갑니다. 심도있는 논의 준비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학회계직 직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모든 논의 대전제는 일단 현황자체를 안해야 하는데 노조측이나 위원님들이 요구와 동의가 있으면 대학회계직에 현재 우리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개자료 범위내에서 현황이라든가 급여수준, 직종, 직책 이런 현황들 그런것들을 원한다면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기타 안전 우리 주상현 처장님

(양병우)

위 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회계직 문제가 직접적으로 오늘안전과 (주상현) 관련이 부족하긴 하지만 대학회계직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학처가 대학회계직을 뽑고 그랬는데 이걸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회계직으로 계약을 맺다보니 처우나 금액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장기적으로 재원이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물론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감안 해주십사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회계직 연봉을 체결할 때 그래도 우리 대학의 근무경력이라든가 있으면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경력이 산정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 분들이 지금 현재 18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데 결국에 성과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받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업무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추후에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우리 처장님 전공이 행정학 아니신가요? 지금 문제가 (양병우) 머냐면 기타 안전이라서 상정 안전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학처에서 대학회계직을 뽑는 것은 문제죠. 왜냐면 법상에 전문경력관제도가 있는데 대학회계직하고 전문경력관하고는 물론 소수 자체는 재정 자체는 대학 회계에서 나오지만 직급이랑 제도자체가 대학회계가 아니죠 그건 그러기 때문에 전문경력관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법을 만들어서 전문경력관을 뽑아야지 대학회계직으로 뽑아놓으니까 회계직 직원이 늘어난거잖아요. 처장님 지금 입학처에 전문경력관 제도가 도입이 되어요. 그게 지금 어느 누구도 행정학과 교수님이 그 직을 안맡아서 그래요. 이해를 못한다고요. 처장님 전공이시니까 그 부분이 좀 제도가 만들어져야 우리 전문경력관 제도를 들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경력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참조로 드렸습니다.

위 원 : 대학회계직 논의가 있어서 제가 제안드린것에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대 (박성수) 학회계직 현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기회를 마련해주면 보고를 드리겠다.

(양병우)

위 원 : 대학노조측에서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난 4월8일 교육부앞에서 고등교 (정재안) 육 재정을 위해서 기자회견, 국공립대학 조합원들을 대표로 해서 각 대학의 지부장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저도 참가를 하고 왔고요. 오늘도 우리 대학에서 2명이 대표로 호남권역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계속 고등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노조가 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도부에서 먼가 활동을 하려면
(양병우) 회원들의 회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니까 그것이 더 실재적
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럴려면 빨리 초대를 해서 그게 무엇보다도 현안
사업 그게 개선이 되어 지도부들이 먼가 지도활동을 하는데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가장 중요한가 싶어요. 예를 들자면 새로운 사업을 아까
교연비도 그 항목이 안되면 먼가 좀 바뀌어서 할려면 연구가 필요하잖아
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교측에 자주 요청을 해서 이것을 해달라 저것
을 해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 먼가 지도부에 재정기반을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대요.

위 원 : 네 알겠습니다.

(정재안)

위 원 : 그러면 우리 정재안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학회계직 현황보고를 해도 괜찮
(박성수) 겠습니까?

위 원 : 네 그것은 공개되어도 괜찮습니다.

(정재안)

위 원 :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 또 혹시 마치고 전에 운영방향이나 구체적으로 대학 발전방안에 얘기가
(양병우) 오가서 혹시 더 의견을 내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이경환) 하겠습니다.

작성일 : 2021. 4. 29.(목)

위 원 장 : 양 병 우 

간 사 : 이 경 환 

기 록 자 : 김 선 응 